

제418회 국회
(정기회)

법 제사법 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7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2월10일(화)

장 소 법 제사법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6291)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6292)

상정된 안건

-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6291) 1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6292) 20

(11시07분 개의)

○소위원장 김승원 의사일정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 제사법 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건의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참석하셨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소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6291)

(11시08분)

○소위원장 김승원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6페이지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제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등을 통한 내란 총지휘 의혹 사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 21조에서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제 심사하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수정안을 고려하여 심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양자의 비교표는 별지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안 3조에서 제5조까지는 특별검사의 임명, 결격사유 및 정치적 중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임명절차 중 주요 내용으로 특별검사후보자추천위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고 이들이 각 1명씩 총 3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 간주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특별검사 등의 권한 및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후보자 8인에 대해 임명요청을 하고 대통령이 4인을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관은 80인 이내에서 특별검사가 임명할 수 있고 파견검사 40인 이내, 파견공무원 80인 이내에서 인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8조는 비밀 누설 금지, 수사내용 공표 금지, 영리·겸직 금지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원칙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입니다. 재판기간은 1심 6개월 이내, 2심 3개월 이내, 3심 3개월 이내입니다.

안 제9조제2항은 특별검사가 필요한 예산에 관하여 지급해야 할 기한을 정해 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요구기한 내에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는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사건의 처리보고, 안 제12조는 대국민 보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안 제13조부터 17조까지는 특별검사의 보수·퇴직·해임·신분보장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는 재판관할, 이의신청, 별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 제19조는 압수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과 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국가정보원 및 군으로 하여금 증거의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21조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가 이 법의 범죄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그 사건과 인력을 인계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칙 안 제4조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9조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점에 비춰 봤을 때 특별검사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보충성과 예외적인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원론적으로 드리고요.

각론으로 말씀드리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중 2조 1항의 3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1항 3호를 보시게 되면 ‘법무부 교정국 소속의 동부구치소에 체포한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는 등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의혹 사건’ 이것은 일부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을 참고해서 대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사실과 명확하게 다르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당시에 동부구치소에서는 비상대기를 요구했지 비상소집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방을 비우라는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 2조 1항 3호 부분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수사 대상 중에 14호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호인 14호를 보시게 되면 ‘1호부터 13호까지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및’ 그다음 부분입니다,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데 과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가 어떤 것인지는 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12호를 보시게 되면 ‘범인 도주·은닉, 범죄은폐, 증거인멸 행위’는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2호에 규정된 ‘도주·은닉, 은폐, 증거인멸 행위’를 제외한 별도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가 어떤 것이 있을지 의문이 들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로는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어떤 행위가 이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들기 때문에 14호 부분에 대한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특별검사법의 특이한 점이 19조를 보시게 되면 압수수색에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112조는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 업무상 비밀 등이 있을 때 중대한 이익을 해하느냐 여부에 따라 가지고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규정이 돼 있어서 나름대로 비교형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기존에 이루어진 특별검사에도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규정대로라면 공무상 비밀이나 군사상 비밀 등등이 아무런 이익형량 없이 다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 형사소송법 체계에 비춰 봤을 때 다소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우선 전문위원실에서 관련 기관의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시한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너무 급박하게 이 사안을 받았고 특정 조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그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이 사전에 제출되지 못한 점 전문위원실이나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의 입장은 간략하게 정리한 두 페이지짜리 서면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시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서면은 위원님들께 제공드렸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서면을 좀 정리해서 한 게 두 페이지 정도 되는……

○소위원장 김승원 주신 서면은 위원님들께 배포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러면 그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건과 다음에 심의할 안건 두 건에 대해서 공통적인 의견인데요.

첫 번째, 6조 3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종전 저희 1소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논의할 때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관계 기관의 장이라는 것에 법원장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데 법원장은 현재 이런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아래 파란색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위딩을 한다면 법원장이 제외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난 소위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 조항은 이렇게 바뀐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선 차관께서도 안 19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와 같이, 현재까지 시

행된 법령에는 이런 조항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봄늦게 이것을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2쪽을 보시게 되면 이럴 경우에 무제한 압수수색을 허용하게 돼서 국가안전 보장에 대한 여러 우려 요소가 있고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라는 충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계엄과 관련된 증거 확보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을 배제하고 국가기밀이 보관된 장소에 대해서 압수수색의 특례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특히 국가기밀이 보관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밀의 유출 우려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완 장치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점이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우려를 넘어서서 어떠한 조항을 통해서 이것을 제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끝에 예시 규정을 한번 마련해 봤는데요. 그래서 2항과 3항을 뒤서 2항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모두 국가기밀을 보관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종래 이와 같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보관되어 있는 장소가 국가기밀을 보관하는 장소이다 보니까 실제 압수수색이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아마 이번 특례 규정을 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압수수색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무관한 정보를 지득할 가능성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 부분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 규정을 2항에다 뒀었고요.

그리고 3항에 있어서는 실제 집행계획서의 요지 등을 제출함으로써, 국가기밀을 보관하는 장소에 대해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함에 있어서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2항과 3항을 예시로 제안해 보았습니다.

그 외 나머지 사항은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어제 아침에 이 자리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의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많은 반대 의견을 우리가 피력했습니다만 결국은 일방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또 동일한 내용으로 일반특검에 관해서 지금 다시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시행과 관련돼서 내란죄 혐의를 두고 경찰, 검찰, 공수처까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벌써 검찰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사의 성과도 보고 있고 또한 수사 속도도 아주 굉장히 빠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검찰, 경찰, 공수처 전체에 대한 민주당의 불신이 있어서 특검을 발의한다고 합니다만 그러면 상설특검이랑 일반특검도 수사를 경쟁시킬 겁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2개 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수사해서 특검들이 나서서 서로 경쟁적으로 내가 뭐 했니, 내가 누구를 검거했니, 수사했니 그런 보도로 온 언론을 도배시킬 겁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법안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일반특검이 상설특검을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 규정을 또 넣어 놨어요? 그러면 뭐 하러 상설특검법을 통과시킵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대통령께서 임명을 안 하실 것 같아서……

○**박균택 위원**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아서……

○**유상범 위원** 가만있어 봐요. 지금 몇 조에 있어요, 그게?

○**서영교 위원** 21조.

○**박균택 위원** 거부권 행사가 당연히 예상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윤석열 대통령께서 상설특검 절차에 따라서 임명만 하시면 이런 일 반특검법이 필요가 없는데 지금 추천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다면 혹은 추천된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유상범 위원** 됐어요, 봤어요. 봤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까지 끌고 가는 모습,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다시 행사한다면 지금 직무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국민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나오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이 반대든 아니든 간에 결국은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지는 확고해 보이고, 그에 따라서 과거 소위에서 법안에 대해서 조문 하나하나를 논의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그것이 논의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좋지만 목적을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각종 법률 규정이 형사사법체계나 다른 규정에 위반돼서 그것이 결국은…… 이 법이 우리 법체계의 정합성이나 그것을 크게 해하지 않도록 하는 의견들이 법무부에서도 제출됐고 법원행정처에서도 제출됐습니다. 여러분이 물고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여기 이 자리에서 당부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정도의 노력은 여러분이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관련돼서 벌써 네 번째지요. 이미 벌써 네 번째 발동했고 그것과 관련돼서는……

○**소위원장 김승원** 그것은 지금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 자리를 이걸 얘기하고, 마무리하고 나도 일어서려고 합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이것 하시고 저희 얘기도 듣고 가세요.

○**유상범 위원** 무슨 들을 얘기가 뭐 있겠어요, 새삼스럽게.

○**서영교 위원** 조금 더 그러면……

○**유상범 위원** 가만있어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서영교 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뭐야. 김건희 방탄 아니야?

○**유상범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그 법이 갖고 있는, 서로 간의 다른 주장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이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우리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자체는 입증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동한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유상범 위원** 그렇게 주장을……

○**서영교 위원** 유상범 간사님, 그런 게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예요.

○**소위원장 김승원** 하여튼 정리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특검을 계속 그렇게 거부하니까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진 거예요.

○**유상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장 김승원** 유 간사님……

○**유상범 위원**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후에는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 사법적 절차에 있어서는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목적을 위해서 기존의 모든 법체계 시스템을 망가트리는 그런 법률 조항이 들어가서는 곤란하다.

○**서영교 위원**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으면 짚어 보세요.

○**유상범 위원** 지금 지적을 하고 있잖아, 저기서요.

○**서영교 위원**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유상범 위원** 아니, 법원행정처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 법무부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서영교 위원** 헌법재판소도 권한 남용의 소지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 의견도 지금 받아 왔잖아요.

○**유상범 위원** 지금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딴소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서영교 위원** 뭘 못 알아들어요?

○**유상범 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서영교 위원** 지적하는 부분은 넣는 거고.

○**유상범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서 법을 만들더라도, 여러분이 통과시키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한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얘기를 해요?

○**서영교 위원** 무슨 소리예요. 여기 와서 그걸 어떻게든 막아 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유상범 위원** 뭘 막아 봐요? 내가 막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서영교 위원** 특검도 안 되고 김건희도 안 되고, 막아 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유상범 위원** 제가 막는다고 막아져요?

○**소위원장 김승원** 잠시만요.

○**서영교 위원** 안 막아지니까 여기서 보고 동의를 하세요!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좀 진정하시고요.

○**서영교 위원** 탄핵에도 동의하시고.

○**소위원장 김승원** 잠시만요.

○**서영교 위원** 탄핵을 동의하지 않고 억지로 막아서 지금 직무를 계속하게 해 놓고……

○**유상범 위원** 뭘 막아서요?

○**서영교 위원** 무슨 말이 많습니까? 직무를 계속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상범 위원** 입 좀 다무세요.

○**서영교 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김승원** 저희는 논의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직무 안 하고 있잖아요.

○**서영교 위원** 직무를 뭘 안 해? 홍장원도 경질시키고 다 하더만. 그게 말이 돼요? 임명하고, 그게 직무를 하는 거지 안 하는 겁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일단 법안 논의에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유상범 위원** 법안 논의하시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그 말 하려고 들어오시면 그게 되는 겁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유상범 간사님, 아무튼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른 정말 초유의 사태인데……

○**유상범 위원** 자, 내란죄 여부는……
보세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 대상이 국회 아닙니까?

○**이성윤 위원** 내란죄가 명백합니다.

○**유상범 위원** 내란죄 여부는 김승원 위원장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사법적 판단입니다. 그걸 가지고…… 주장은 할 수 있어요.

○**소위원장 김승원** 내란죄의 대상이 국회의 파괴였고 헌법기관의 무력화 아닙니까?

○**유상범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이성윤 위원** 우리가 피해자잖아요. 금방 알지요. 보면 압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 명확한 사실을……

○**이성윤 위원** 굳이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합니까?

○**서영교 위원** 비상계엄을 해제 못 하게 한 동조자 아니에요?

○**유상범 위원** 누가 해제 못 하게 했어요? 누가 해제 못 하게 했어요?

○**서영교 위원** 국회로 안 들어오고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려고 당사에 모여 있었던 동조자 아니에요?

○**유상범 위원** 아니, 150명이 안 되게 만들었어요, 국민의힘이?

○**서영교 위원** 동조자 아니에요, 안 들어온 건?

○**유상범 위원** 우리가 막았어요, 150명이 안 되게?

○**이성윤 위원** 막은 건 실패했잖아요.

○**유상범 위원** 누가 막았어요?

○**서영교 위원** 우리도 150명이 넘어서 할 수 있지만, 동조한 것 아니에요?

○**이성윤 위원** 당사에 모이라고 했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유상범 위원** 우리 당 의원들 안 들어왔어요?

○**이성윤 위원** 또 의결 시간을 늦춰 달라고 했잖아요.

○**유상범 위원** 자, 그만합시다. 알았습니다.

○**서영교 위원** 경찰이 국회 막은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 한번 해 봤어요? 못 들어가게 막은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 한번 해 봤어요?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일단 법안 논의에 좀 집중을 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아니, 와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그렇잖아요.

○**유상범 위원** 아니, 지금 내가 여기서 못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내가 못 할 말 한 게 아니잖아요.

○서영교 위원 아니, 탄핵을 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지. 평양 상공에……

○유상범 위원 법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띄운 게 누구예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띄워서 전쟁을 유발시키려고 한 게 누구예요? 윤석열과 김용현 아니예요? 전쟁 일으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유상범 위원 자,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북에서 내려온 오물풍선 원점 타격하겠다고 한 게 누구예요? 윤석열과 김용현 아니예요? 전쟁 일으키려는 겁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제 법안 논의를 해 주시지요.

○이성윤 위원 이성윤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법원행정처 의견에 대해서 엄청 유감입니다. 특별검사법 6조 3항에 보면 법원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법원이 왜 이렇게 예민한 반응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19조에 대해서 법원이 언제부터 영장을 발부하고 특별검사가 국가 기밀을 유출할 위험이 있다고 걱정을 했습니까? 진작부터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 이런 걱정을 했으면 이렇게 영장 발부율이 98%까지 되지 않지요. 어떻게 영장 발부하면서 특별검사가 국가기밀 유출하는 것까지 걱정을 해서 이런 조문을 만들어 오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 언제부터 특별검사를 못 믿어 가지고 영장청구서에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 요지를 제출하도록 했습니까? 이런 것은 옛날에 시민단체에서 법원에다 사전에 통지하라고 수도 없이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특별검사법에만 걱정이 됩니까? 특별검사는 염려가 되고 일반 검찰은 염려가 안 됩니까? 검찰에서 엄청나게 수만 건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유출하고 그걸 이용해서 겁박하는데도, 법원이 한 번이라도 통지를 했으면 저 이런 의견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집행계획서까지 제출하라고요? 특별검사가 압수수색해 가지고 정보를 흘리면, 유출하면 처벌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넣으라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방부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군부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일반 영장으로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보세요. 승낙을 받게 돼 있는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런 조항이 들었다 하더라도…… 어제 MBC 보도가 됐어요. 경찰에서 국방부장관 공관을 압수수색하니까 경호처에서 막았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기밀이 들어 있느냐, 중대한 국가기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화장실 정보도 국가 정보라고 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범위와 장소를 보십시오. 법원이 왜 이렇게 정말 사안의 중대성을 모르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대통령실, 국방부, 각급 부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기존 형사소송법으로 가능한 겁니까? 압수수색 하나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적인 압수수색 범위를 넣고 그 결과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특검이 정보를, 국가기밀을 유출했다든가 그러면 특검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특검이 영장을 청구할 때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요? 그런 건 처음부터 법원이 수년 전부터 그런 주장을 했다면 모르겠으되 시민단체에서 집행계획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도 법원이 반대했잖아요.

저는 이 사건의 특수함, 어제도 분명히 보도가 됐습니다, 경호처에서 막아섰다고. 국가 이익을 해한다고 해 가지고 거부해 버리면 이 사건은 압수수색 짱이에요. 압수수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만에 한해서는 특검에서 예외적으로 기존의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규정을 배제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더 넣어야 하는데 넣어야 할 부분이 빠졌습니다. 19조에 보면 국가정보원, 군…… 대통령경호실이 빠져 있습니다. 어제 MBC 보도를 보시면 대통령경호실에서 한참 동안 못 들어가게 막았다는 거예요. 공관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김건희 소환장 전달하려 갔었을 때 보면 경찰과 경호처에서 막아요. 그날 하루 종일 실랑이하다 영장을 집행 못 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국가정보원, 군 그리고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대통령경호실은 거부할 수 없다라고 넣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현희 위원 저도 이성윤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데요. 지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도 당시에 청와대의 경호실에서 반대해서 결국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 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랑도 다른 더 위중한 상황이고 이성윤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이 사건의 범행 현장, 압수수색 대상은 사실상 국가기밀로 그동안 형사소송에서 압수수색을 못 했던 군대 그다음에 청와대, 경찰 이런 장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좀 형소법의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 꼭 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특별하게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보충적으로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제가 먼저 말씀을……

저도 두 위원님과 같은 입장인데요. 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가서 일을 했을 때 박근혜정부가 인수인계한 자료가 8페이지라 그러더라고요. 박근혜정부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정부한테 준 자료가 A4 용지로 8페이지, 표지 빼놓고는 7장인데요. 그 정도로 모든 걸 다 파기하고 그랬다는 거지요. 예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기록관에다가 수만, 수십만 페이지의 기록을 남겼다는 데 박근혜정부는 숨기기 급급하느라고 그랬다는 건데, 그런데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도 지금 굉장히 많이 파기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법원에서 우려하시는 이 부분들이 평상시에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대통령실이라든가 여러 정보기관에 가 보면 어떤 자료가 보존돼 있다기보다도 다 파기되어 있거나 멀쩡되어 있어서 일단은 수사에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예컨대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또 제한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부 기각하거나 또 압수수색 대상을 명시해서 지정하실 수도 있고 그런 법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대통령이 내란을 했다는 정말 초유의 사태에 한해서는 19조를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 의견을 드리고요.

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특례 규정이 들어간 취지는 특히 110조와 관련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제한 때문에, 과거에 이러한 장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사유를 들어서 압수수색이 집행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번에 생긴 계엄의 중차대한 것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은 110조를 배제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돼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19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정에서 국가의 중대 기밀이 유출될 우려에 대해서 이성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누설을 한 사람들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표명했었을 때 그러면 대안이 뭐냐라는 측면을 과거에도 요청하신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그러한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대안으로 2항, 3항 정도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예시로 가져온 것뿐이지 꼭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라는 점 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윤 위원님께서 대통령경호실도 넣자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박균택 위원** 그 부분 좀 의견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박균택 위원님.

○**서영교 위원** 중요한……

○**이성윤 위원** 넣어야 됩니다.

○**전현희 위원** 넣어야 됩니다.

○**박균택 위원** 이성윤 위원님 말씀처럼 군사경찰단, 대통령경호처 여기를 협조 대상에 집어넣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관계 기관의 장’을 그냥 ‘관계 기관’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장들의 유고 사태가 또 생기는 경우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관이라고 해 놓고 밑에다가 ‘관련 자료의 제출과’ 뒤에 이 말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나 넣는 게 좋을 것 같고. 뒤에다가 ‘이 경우 해당 기관의 관계자는—장이라고 하지 말고요—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넣어서 따를 의무를 좀 더 구체화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리고 현안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차관님, 내가 오늘 아침에 어느 방송에 나가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길래 저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하는 것이 관할권 시비도 없는 것 같고 원칙적으로 맞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사태를 빨리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검찰 수사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가 검찰 편을 든다고 굉장히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왜 검찰은 지금 저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겠다고, 국가수사본부가 하겠다고 하는데도 기어이 검찰이 하겠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기본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혐의에 대한 단서가 드러났고 그러한 혐의가 드러난 이상 검찰로서는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다만 경찰과 공수처와의 중복 문제는 현 제도상으로 나타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여서 그 부분은 조화롭게 조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경찰한테 맡기면 경찰은 이 일을 못 할 거라고 믿어서 검찰이 기어이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결국 그 부분은 정책적 판단을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수사를……

○**박균택 위원** 어떤?

○**법무부차관 김석우** 정책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균택 위원** 정책적 판단?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수사를 할 필요성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부분은……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그 정책적 필요성이 뭐냐 이 말이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결과적으로 이 사안……

○**박균택 위원** 경찰은 수사를 못 할 거라는 뭔가 구체적인 합리적인 판단이 또는 근거가 있는 것이나 아니면 막판에 검찰이 공을 세워서 검찰의 어떤 명성이나 조직의 영속성을 보장받기 위한 그런 의도인 것이나, 둘 중에 뭐냐 이 말이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이 부분은 사실은 검찰에서 하고 있는 수사 개시 그리고 방식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일체 관여를 하지 않은 부분이라 저희로서는 그 부분은 검찰에서 독자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고. 구체적인 수사의 필요성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직접 하고 있다라는 정도밖에는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경찰, 검찰을 따질 때는 아닌 것 같다는 것이 내 생각이고. 그러나 경찰이 우선이라는 생각 또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특검이 우선이라는 생각 이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를 지금 당장 반대할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러나 너무도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이 사건에 손을 대는 것도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불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무튼 검찰에 한번 얘기를 해서 이 수사 경합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꼭 검찰이 해야만 하는 것인지, 오히려 검찰이 경찰이 그렇게 못 할 때 나서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차라리 김건희 씨 주가조작 사건이나 명품백 사건 때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그 결기가 그때 있었다고 한다면 좋았을 텐데 왜 뒤늦게 와서 일각의 지적처럼 8월 15일 해방 선언이 되고 나서 8월 16일부터 이렇게 독립운동 열심히 하겠다고 나서느냐는 이런 비판을 받아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참 답답하고 힘들거든요.

검찰이 꼭 해야 할 이유가 뭔지도 한번 따져 보고 그리고 경찰의 활동도 보장해 주는 방법이 있는지, 이 수사권 경합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당하는 이런 상황들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정말 냉철하게 판단하도록, 협의하도록 한번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체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셨고 제가 언론상으로도 확인해 보니까 아마 대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이제 경찰과 공수처와의 수사 조율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시에 본회의가 있어서 오늘 집중적인, 효율적인 토론이 필요합니다.

19조를 보시면 이성윤 위원님께서 대통령경호처 제안을 주셨는데 대통령비서실도 열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직 체계가 달라서요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군’이라고 나오는데 국방부 포함 여부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시는데 ‘국방부 등 군’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열거를 해 주는 게 간명하고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방부장관이 계엄의 거의 핵심 세력이어서 국방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6조를 보시면, 법원행정처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지난번 김건희 특검 때도 저희가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했으므로 법원행정처에서 배포하신 1페이지, 특별검사 수사 대상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되 관계 기관의 장이 유고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계 기관’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이 요청에 응해야 된다 혹은 따라야 된다라는 취지로 그 문구를 정리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대상 2조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조는 우선 의혹 사건인데요. 저희가 상설특검에서 워낙 확인된 동영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제보가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 사건이라고 했나요? 그것과 용어를 맞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3호, 법무부 교정국 소속 동부구치소는 JTBC에서 보도를 했으나 이것은 아마 법무부의 정정 요청인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정정 요청에 의해서 아마 이 보도를 내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기재, 동부구치소는 삭제를 하고요. 만약에 3호를 살린다면 이것은 가장 뒷부분으로 보내고 문구를 ‘체포한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방첩사 등 수감시설을 마련하는 등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런 정도로 해서 맨 뒷부분으로 넣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날 저희가 비상대기만 명령을 했지 소집을 한 적도 없고 방을 비워라 말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는 명백한 오보라고 봅니다. 전혀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비상대기만 했지……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러니까 이 JTBC 뉴스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상

소집을 했다. 두 번째, 방을 비우라.

○서영교 위원 무슨 비상소집이요? 법무부……

○법무부차관 김석우 동부구치소에서 그 직원들을 상대로.

○서영교 위원 아, 동부구치소가 직원들을 상대로?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런데 일단은 비상소집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방을 비우라는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은 명백한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저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안 맞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영교 위원 명백히 없다는 것은 지금 법무부차관이 확인했다는 얘기인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저희가 교정본부 측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JTBC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기사를 내렸다는 건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래서 처음에 JTBC에서는 저희 반론을 받아 줬고 저희는 일단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정보도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제가 내용을 보도만 봤는데 동부구치소에 독방을 만들어 둬라. 그런데 이게 ‘없습니다’, 정정보도 청구를 했는데, 다른 곳에는 없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객관적인 자료도 있고 저희가 비상연락체계 관련 문자도 얼마든지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 저희는 업무 연락을 했을 때도 그냥 ‘즉시 응소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 이런 문자를 보냈을 뿐이고 동부구치소에서 방을 비우라고 한 사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말씀드리건대 이것은 정말 사실과 다른 부분입니다.

○서영교 위원 비상계엄이 내려왔으니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 두어라?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응소할 수 있도록’, 보통 저희가 을지연습 때 하는 이런 식의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소집한 것도 없었고 두 번째가 중요한 부분인데……

○서영교 위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니 즉시 응시할 수 있도록……

○법무부차관 김석우 정확한 문구는 이렇습니다. 제목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교정본부 업무 연락’, 내용은 ‘직원 여러분께서는 즉시 응소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고 응소는 실제로 안 됐지요.

○서영교 위원 응소가 뭐예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응소, 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집이지요, 소집. 그러니까 저희는 소집을 한 게 아니고 여차하면 소집이 될 수 있으니까 대기해 달라라고 한 겁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응소를 하기 위해 문자를 보내신 거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런데 이것……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전체 모아서 대책을 세우려고 했는데 빨리 해제돼 버렸으니까 못 한 거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그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는 추후에 검토할 부분이고 당시에 했던 것은 저희가 큰일이 생기면 비상연락체계는 가동해야

되니까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이 문자만 보냈던 거고 실제로 그 이후에……

○서영교 위원 재빠르게 보냈네요, 그 문자를.

○법무부차관 김석우 이것은 비상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저희가 을지연습 때도 늘 하던 그런 부분이라 이것은 내부적인 그런 응소 체계를 갖춘 것이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을지연습하고 불법한 비상계엄이 같아요?

○전현희 위원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어제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재빠르게 교정본부에 응소 준비를 시킬 정도면 당연히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은 이 비상계엄이 법적으로 불법인지 아니면 정당한지를 법률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절차를 보면 비상계엄 선포 전에 법무부가 이런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해야 돼요, 비상계엄 선포 전에. 그것 하셨나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의 적법성, 합법성 여부를 둘러싼 검토 부분은 별도로 하고 지금 여기서는……

○전현희 위원 아니, 그것 했냐고 제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비상계엄 선포 전에 법률 검토했냐고요, 비상계엄 선포의?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비상계엄 선포 전에 저희는 전혀 관여할 수 없었지요.

○전현희 위원 정보가 없어서 못 했다는 거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전혀 할 수가 없었지요.

○전현희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해야지요. 했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전현희 위원 지금 물어보잖아요. 그 이후에 이 비상계엄의 적법성, 법적 검토 하셨나고요, 법무부에서.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이후에는 직후에 바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전현희 위원 해제가 됐든 안 됐든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의 의견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적인 의견. 지금 이것 교정본부에도 응소하라고 재빠르게 이렇게 문자를 보낼 정도면 당연히 법무부가 해야 되는 이 비상계엄의 법적 정당성 여부를 검토를 했어야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위원님,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전현희 위원 했습니까? 묻는 거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검토 부분은 별도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전현희 위원 아니, 했냐고요. 지금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지금 묻는 것은 했냐고 묻는 거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직후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전현희 위원 해제가 됐더라도 이게 지금 내란죄나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는 게 계속 지속이 되는데 법무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지요. 아직 안 했다는 얘기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부분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현희 위원 검찰의 수사를 떠나서 이것은 행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이런 법무부의 법적인 검토를 할 것이 규정이 돼 있다고요. 법무부의

책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법적인 검토는 해야지요. 그것을 검찰에 갖다 주든 말든 그것과 별개로 법무부의 할 일이……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전현희 위원 검토를 하십시오.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 됐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마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저희 법안 심의를 해야 되는데요.

○서영교 위원 제가 마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법안 심의를 해야 되는데 좀 따라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동부구치소 관련한 3항을 맨 뒤로 할 거냐 아니면 뺄 거냐 이런 의미잖아요. 저는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해도 되기는 하는데 지금 들어 보니 교정국에서 알려 왔습니다라는 얘기 했지만 비상소집을 할 수 있어서 응 소 준비를 하라라고 법무부가 문자를 보낸 건가요, 아니면 교정본부에서 동부구치소에만 보낸 건가요, 아니면 모든 구치소에 다 보낸 건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이것은 교정본부 측에서 산하에 있는 교정시설에 다 보낸 겁니다.

○서영교 위원 교정본부 측에서 산하에 있는 모든 시설에 다 보낸 건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왜냐하면 교정시설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계엄 선포가 유지가 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일단은 선포된 상황에서 내부 동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의 특수성상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요.

○서영교 위원 글쎄, 교정 그게 특수성……

제가 보기에는 3항은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뒤로 해서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는 틀림없이 일이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일이 있고 향후를 대비해서 틀림없이 준비 작업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와 관련한 것에 대해서 교정본부가 어떤 문자를 다시 알렸는지에 대한 것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3호를 뒷부분으로 돌리고요. 그다음에 앞의 동부구치소는 삭제를 하고 다만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의혹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방첩사 등의 장소를 마련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은 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전문위원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문구를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호, 5호가 중복된 면이 있는데요. 중복되지 않도록 4호에는 국회의장, 국회 의원 및 정치인 대상으로 한정하고 5호에는 국회의장, 국회의원을 삭제하고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법조인, 언론인, 시민사회 인사로 이렇게 대상을 나누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성윤 위원 두 항을 합치면 안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두 항을 합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성윤 위원 합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그러면 두 항을 합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항을 합쳐서 대상을 열거하고 행위로 나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항에 있어서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이것은 사실은 방해행위가 예컨대 허위 진술한 경우에도 방해행위에 포함되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이것은 저는 삭제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특별검사 등 수사에 대한 위계나 위력 같은 것은, 위계나 위력으로써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22조에 있어서 충분히 22조가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7페이지, 14호 문구는 삭제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이성윤 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수사에 관한 방해행위’, 뒤의 방해행위 부분만 뺀다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뒤의 부분만. 방해행위는 당연히 22조에 의해서 특별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처벌 규정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인지된 관련 사건만 해도 다 포섭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논의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특별검사 추천에 대해서……

○이성윤 위원 3조 논의해야……

○소위원장 김승원 3조요?

○이성윤 위원 특별검사 임명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란 특검법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법학교수협의회, 세 곳에서 추천을 하고 이 세 곳에서 추천한 분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회는 중간에서 일체 관여하거나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의 특검 구조는 야당이 추천하는 걸로 했고요, 지금도 보면 결국 대통령실과 정부 그다음에 국힘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검 관련해서 추천권을, 추천 부서를 다시 한번 고려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현희 위원 동의합니다.

지금 상설특검의 특검 추천 조항이랑 같게 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김건희 특검 때 우리 야당이 추천권을 가지는 그 내용대로 이 특검법의 추천권을 수정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되게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그 특검법에, 대통령에 관련한 특검입니다. 대통령에 관련한 특검이기 때문에 야당이 특검후보자 2인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형태를 띠었었습니다, 최순실 때.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염중한 시기입니다. 대통령의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고 너무나 많은 기관들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성윤 위원님과 전현희 위원님 말씀처럼 대한변협, 교수협의회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저항도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결기 있게, 단단하게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야당과 교섭단체, 비교교섭단체 등이 추천하는 형태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심사자료 8페이지에 있는, 김건희 특검법 심사자료 8페이지요.

그러면 추천만 더불어민주당과 비교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씩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전현희 위원** 3조 조항을 그대로 가져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되는 것까지.

○**서영교 위원** 동의합니다.

8페이지의 절차에서 3번부터 4번, 5번 그 말씀이시지요?

○**이성윤 위원**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3·4·5항,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성윤 위원** 몇 명, 간주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김건희 특검법 3조 내용 그대로 옮겨 오면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3조 3항만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요.

○**전문위원 김성완** 날짜들이……

○**서영교 위원** 날짜는 또 다르네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요.

○**서영교 위원** 3일 이내.

○**소위원장 김승원** 그래서 그대로 올 수는 없고요. 날짜들이 조금 달라서 2항에 대해서만 김건희 특검법의 추천, 더불어민주당과 비교교섭단체의 추천으로 하고, 그것도 3항에 그대로 옮기고 날짜는 똑같이……

○**이성윤 위원** 2일로.

○**소위원장 김승원** 날짜는 일반 특검법에 있는 그대로 넣으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추천권만……

○**서영교 위원** 3일 이내.

○**전현희 위원** 그리고 4항은 2일 이내 그대로.

○**서영교 위원** 대통령 임명은 2일 이내.

○**소위원장 김승원** 전문위원님, 이것 정리가 되시겠지요?

○**전문위원 김성완** 예.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3조 2항 부분을 김건희 특검법과 같은 추천 방식으로 하되 날짜라든가 또 임명 간주 규정은 일반 특검법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논의할 부분이 있으신가요?

○**서영교 위원**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떻든 가는 과정 속에서 법원행정처도 이야기한 것이 있지만 국가기밀을 빌미로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아까 이성윤 위원님 말씀처럼 경호처가 그런 걸 빌미로 방해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걸 방해해서는 안 되나 또 말씀처럼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서 국가기밀이 새 나 가지 않게 하는 것들도 중요해서 이런 건 법안 심사 과정 속에서 한 번 더 중요하다, 이

럴 때 일수록 더 잘 짚어 나가고 더 치밀하게 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걸 빌미로 또 느리게 갈 수도 없는 거니까 빠르게, 그렇지만 무소불위는 아니다 이런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제정안에 관련해서 수사 대상에서 각 호에 있는 ‘의혹 사건’을 ‘범죄 혐의 사건’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3호를 예를 들어서 ‘방첩사 등 기관들이 법무부 교정국 시설에 체포한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는 등’ 이런 정도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초안으로 봤을 때.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법무부 교정국은 아예 삭제를 해 주세요.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도록 ‘방첩사 등’ 거기까지만……

○**전문위원 김성완** ‘방첩사 등이 체포한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는 등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1호 다음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4호와 5호는 불법체포와 관련된 조문인데 이 2개를 합해 가지고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및 정치인’ 그다음에 ‘전 대법원장, 전 대법관 등 법조인, 언론인, 시민사회 인사 등에 대한 불법체포를 감행하는 등 내란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런 정도로 초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다 의혹 사건을 범죄 혐의 사건으로만 바꾸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호의 제일 마지막에, 뒷부분에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이거는 삭제하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조의 특별검사 추천 기관에 관련해서 기존에 있었던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 부분을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로 바꾸고 날짜는 기존의 안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조에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에 관련해서 대법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견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수사를 한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건의’, 이런 쪽으로 바꾸되 내용 자체는 박준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조 3항에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군검찰단, 각 군검찰단’ 여기에 군사경찰단과 대통령경호처 등을 포함시키고, ‘등 관계 기관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공판기록, 수사기록 및 증거 등 관련 자료의 제출과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수사 활동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초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박준택 위원** 따라야 한다는 얘기도……

○**전문위원 김성완** 예, 그다음에 후단으로 해서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의무조항을 추가시키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정리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나머지 19조랑 이런 데는 논의는 하셨지만 원안대로 유지하신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성윤 위원** 아까 발표한 것 중에서 수정하는 것에서 2조 4호 관련해서요 계엄 포고령 발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적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하고’ 이 부분을 넣어야 돼요.

○**전문위원 김성완** 예, 알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취지만 말씀드린 거고요 문구 수정할 때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조는 원안대로 하되, 제가 착오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방부 등을 넣는 것으로 아까 정리된 것 아니었나요?

○**서영교 위원** 그렇게 했지요.

○**전문위원 김성완** 그 부분을 제가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비서실……

○**소위원장 김승원** 그것과 해당 법률을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승원** 예.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6조 3항 정리해 주신 과정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관계 기관이 ‘사건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한 관계 기관’이라는 용어를 ‘등’ 다음에 넣는 것으로 종전에……

○**소위원장 김승원** 예, 그렇게 넣을 겁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알겠습니다. 아까 정리해 주신 부분은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전문위원 김성완** 제가 그거 말씀드렸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6292)

(12시06분)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5페이지 오른쪽입니다.

제정안은 특별검사 수사 대상으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명태군의 정부 정책 사업 불법 개입 등에 대한 의혹 사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특별검사의 임명, 결격사유 및 정치적 중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하게 되어 있고, 기타 내용은 오른쪽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특별검사 등의 권한 및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가 8인에 대해 임명 요청을 하면 대통령이 4인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수사관은 60인 이내에서 특별검사가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파견검사 30인 이내, 파견공무원 60인 이내를 기타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원칙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이고 재판기간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는 특별검사의 보수, 퇴직, 해임, 신분보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20페이지를 보시면 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는 재판관할, 이의신청, 별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충성·예외성 원칙,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 과잉 수사,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우려 등등에 대한 기준에 말씀드렸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는 존재한다는 말씀 원론적으로 드리고요.

각론으로 말씀드리면 수사 대상과 관련돼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자체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조 1항 15호 부분은 그 자체로서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데 차관님, 자꾸 보충성 얘기하시고 삼권분립 얘기하시니까…… 법무부의 태도가 기준과 안 바뀐 것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법리적인 측면에서 원론적인 측면을 계속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소위원장 김승원** 비상계엄 전과 후가 똑같으신데요.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지요.

저는 차관님이 얘기하시니까 알았는데, 과연 법무부나 혹은 검찰에서 수사할 때 전후가 똑같은 입장이라면 수사를 제대로 하실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고 이거는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그런 기본적인 원칙 부분에 대한 입장이 그 사태 전과 후에 달라진다는 것도 또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좀 걱정스럽습니다. 법무부도 어쨌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한 마당에 자꾸 뒤를 돌아보시는 것 같아서……

○**법무부차관 김석우**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종전에 정리해 주신 제6조 3항 부분 이외에는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사 대상에 보면 예전에 국민의힘 위원 분들과 논의를 하면서 예컨대 2항에는 상장회사·비상장회사 주식 이게 특정이 안 된다 그래서 도이치파이낸셜을 넣었던 기억이 나오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생각이 나는데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이 안 계셔서 그런 문제점을 얘기 안 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 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아까 내란사건 때도 얘기를 했어야 하는 걸 깜빡했는데 여기 특검 결격 사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영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굳이 여기서……

○**소위원장 김승원** 몇 조이지요?

○**박균택 위원** 4조입니다, 결격사유. 검토보고자료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4조 3호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균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모든 공무원으로 해 놓으면 지금 대통령실이나 검찰에 대한 불신은 있었지만 다른 영역에 있었던 공직자 중에 굳이…… 심지어는 뭐 대학 교수가 있을 수도 있고 경찰이나 법원이나 다른 기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기관에 대해서는 특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불신을 그렇게 받는 위치에 있지는 않은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공무원으로 제한하지 말고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로 한정하면 어떨까 그게 제 의견인데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법을 제안했던, 저도 찬성합니다. 그 문구는 전문위원님께서 나중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주십시오.

이게 지금 네 번째 법안이라 사실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특별히 토론하실 게 없으실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토론하실 게 없으시면 박균택 위원님 안을 반영한 것으로 일부 수정해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제가 잠깐, 이걸 뭐 안 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수사 대상에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하여’ 이 얘기들 있잖아요, ‘불법 여론조사를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이 부분에 부정 여론조사를 하면서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정 여론조사를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 비용은 주지 않고요. 그리고 또 그 비용으로 5만 원권 500만 원짜리 봉투를 2개 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 이 내용이 들어가긴 해야겠지만 읽다가 보니까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은 있지만 정치자금법에 대한 의혹이 빠져 있습니다.

12번에는 공천 개입이 지금 들어 있는 건가요? ‘공천 과정에서 허위·불법 여론조사를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박균택 위원** 공천 개입은 10호에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공천에, 선거에 개입했다는…… 그런데 여기에 정치자금법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그냥 없어도 된다면 괜찮지만 부정선거를 했다, 11번에다가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와 정치자금법 위반의 의혹’ 이렇게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주기도 하고 정해진 선거비용 외에 이런 부정선거 비용, 여론조사 비용을 썼고. 그런데 그건 돈은 안 줬고 그리고 또 돈봉투도 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선거에 개입했다는 11번에 ‘부정선거 및 정치자금 부정의 의혹’ 이렇게 ‘정치자금’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이런 취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부정선거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사건’.

○**서영교 위원** 수수는 주기도 하고 받은 것이기도 하고 그런 거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다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 선거사무소 의혹도 있긴 한데, 예화랑. 그건 김건희 특검법하고 다른가요?

○**소위원장 김승원** 김건희 특검법이라 거기는 조금……

○**서영교 위원** 뭐 관여돼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시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특별히 더 말씀하실 것 없으시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검사 수사 방해행위는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 가지고, 앞의 법안에서도 이 부분은 삭제하셨거든요.

○**소위원장 김승원** 뒤에 위계·위력 수사 방해행위 처벌규정이 있겠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이게 15호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25조에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2조 1항 15호 수사 대상 이 부분도……

○**소위원장 김승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별검사에 대한 처벌조항.

○**법무부차관 김석우** 20조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동일한데 이 문구는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그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오신 김에 잠깐 요청할 자료가 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정본부에서 보냈다고 하는 문자 있잖아요. 문자 내용……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문자를 어디까지 보냈는지 그 내용 보내 주시고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두 번째, 법무부가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날 긴급회의를 했다고 했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긴급회의 했던 대상자 명단, 그리고 그 회의에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를 그냥 검토를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후에 어떤 조치라니요? 비상계엄이 떨어졌으니……

○법무부차관 김석우 계엄선포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서영교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 비상계엄은—어떻든 법으로 잘 따지시니까—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아니면 몰랐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저희가 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어느 범위까지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서영교 위원 제가 물잖아요. 인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면 인식을 하지 않고 그 대책회의를 했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인식에 대한 공유 범위라든지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우선 그 대책회의를 했잖아요. 그 대책회의는 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뭐다가 아니라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니 비상계엄에 맞춰서 그다음 실무적인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논의를 했다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 주된 내용이 어떤 거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당시에 특별하게 어떤 결론이 났던 건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교정시설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은 내부 수용자를 관리 차원에서 이 부분은 뭔가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도, 그 정도가 있었고 이제……

○서영교 위원 잠깐만요. 또박또박 이야기하세요, 대강 넘기지 마시고.

다시,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비상계엄이 옳다 그르다는 떠나서, 몇 시에 그 회의를 했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저는 끝날 무렵에 가서 정확하게 시작 시간은 기억 안 나는데 한 11시 반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11시 30분부터……

○법무부차관 김석우 11시 반부터 해서 한 12시 정도까지 진행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누구 주재로 했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장관 주재로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법무부장관 주재로 11시 30분부터 12시……

○법무부차관 김석우 12시 약간 넘어간 것 같은데 대략 12시경으로 하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11시 30분부터 12시. 맞습니까, 뒤에 기조실장?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12시 정도였습니다.

○서영교 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모였으면 여러분이 흘어질 리는 없고 해제될 때까지 했을 것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닙니다. 하고 각자 사무실로 흘어졌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11시 30분에 해서, 지금 교정시설에는 특수성이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교정시설의 특수성이 있어서 교정본부장에게 수용자 관리에 대한 검토를 지시를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특수성이 있어서 교정본부장에게 관리 지시를 했는데 그래서 문자가 나간 거지요, 그러면?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러면서 교정본부 측에서는 화상회의도 했습니다, 교정기관장과 화상회의. 이거는 제가 자료를 얼마든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교정본부에서 교정기관장하고 화상회의를 하고……

○법무부차관 김석우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상회의를 하는 부분은 그 회의 직후에……

○서영교 위원 제가 물을게요.

교정시설의 특수성이 뭐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교정시설에는 수용자가 있지 않습니까.

○서영교 위원 비상계엄이 나면 교정시설의 특수성이 뭐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수용자들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 수용자가 거기서 내란을 일으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서영교 위원 그렇지 않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있는 수용자를 잘 정리해서 다시 방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서영교 위원 그런 차원이 아닌데 교정시설의 특수성이 뭐예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수용자들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은 또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 비상계엄이 일어났는데 수용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의 특수성이 뭐예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비상계엄의 특수성이지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일어나면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막고 집회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특수성에 의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교정본부의 특수성이 라고 한다면 교정본부에서 내란을 일으킵니까? 들고일어납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건 아니고요.

○서영교 위원 더 무서워서 더 안 될 텐데.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건 아닙니다만……

○서영교 위원 어떻든 교정본부의 특수성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서영교 위원 그다음에 또했던 회의는 뭐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외에 구체적으로 나왔던 거는 출입국 관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외국인들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다만 출입국관리본부 같은 경우는 추후에 상황을 지켜보는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구체적으로 조치를 할 사항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나왔던 거는 교정시설과 출입국 관리는 외국인이 있으니까 두 가지 분야는 추후에 사태를 좀 지켜보면서……

○서영교 위원 두 가지 외에 또 뭐 했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외에는 특별한 것 없습니다. 저희도 이 당시에 구체적으로…… 사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 계엄이 선포됐을 때 뭔가 집행을 할 부분은 없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그 상황을 좀 지켜보자는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법무부는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지금 말한 것에 의하면.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직후에 직접적으로 집행행위를 한 건 없었다는 거지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 일이 없어요? 그럼 법무부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이 비상계엄이 바른 건지 안 바른 건지를 진단해야지요? 법무부는 집행기관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그걸 진단해야지요. 그 진단을 안 했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진단 부분은 별도로 진행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직후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부분은 저희가……

○서영교 위원 이 비상계엄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진단했어요, 안 했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저희는 기본적으로 계엄 선포 행위를 직전에 알 수가 없었고 회의장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각자 비상계엄에 어떤……

○서영교 위원 아니,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선포는 알고 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관 정도 되면 이게 올바른지 아닌지를 진단해서 법으로 좀 하자가 있으면 빨리 법을 받쳐 주든지 했어야 할 것 아니

예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당시로는 제가……

○서영교 위원 그런데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따랐다 이거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당시로는 저희가 회의장에 가기 전까지는 포고령 자체도 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포고령 문안이라든지 다음에 이게 헌법과 법률 규정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요건, 절차가 있는지를 그때부터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할 시간이 없었지요.

○서영교 위원 뭘 알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기본으로 알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심의해야 하는 거고, 심의하고 사인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절차가 있었는지 그리고 심의할 때 찬성을 얼마나 했는지 반대를 얼마나 했는지 그 절차는 맞는지 국회에 바로 통고는 했는지 정도까지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몰랐다는 거지요? 몰라서 아무것도 대책을 못 세웠다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런데 그 당시에 구체적인 경과는 몰랐습니다. 저희가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지요.

○서영교 위원 아니, 알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포고령이 딱 떨어지면 금방 알아채고 준비를 하고 빨리 법을 봐야 되는 게 법무부차관이지 그냥 장사하는 사람처럼 ‘나는 이 일에 충실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법무부차관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2인자 아니에요, 법 관련해서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래서 저희가 회의가……

○서영교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아야지.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래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각자 사무실로 가서 헌법 규정과 법률 규정을 각자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서영교 위원 집은 어디에요, 집은?

○법무부차관 김석우 집은 서초동이고 저는 그날 계속 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서초동에서 법무부…… 뭐라고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계속 사무실에 있었다니까요. 있으면서 계속 헌법 규정……

○서영교 위원 그러면 그걸 살펴봐야지, 11시 반에 회의를 시작했다면서.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11시 반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났고요.

○서영교 위원 알겠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각자 검토를 했다는 거지요, 계속.

○서영교 위원 알겠고요.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요. 나라의 법무부차관 정도 되면 이게 바른지 안 바른지 정도는 빨리빨리 알아보고……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잠깐만요, 들어 보세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서영교 위원 왜 그날도 국회에 와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할 일을 차분하게 하는 것과 상대에게 도전하듯이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왜 그걸 모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몰랐고요, 저는 몰랐고요…… 법무부차관이 몰랐다는 게 이게

무능하고 직무유기지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그렇게 변명하려고 제가 말하는 중간에 계속 끼어드니까 얘기도 길어지는 거고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죄송합니다.

○서영교 위원 저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유능하고 괜찮다고 했던 그 사람이 왜 자꾸 저렇게 하는지, 그리고 끝내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가 내란까지 일으킨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을? 여기에 법무부 수장 그리고 차관 정도는 뒷받침해서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해 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무튼 저도 의문점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체제 전복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이 국회에 있다, 포고령 보면 나오지요. 국회에 있으니까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유가 예산 너무 깎는다, 예산 폭거 그다음에 입법, 입법을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판사를 겁박하고 여러 탄핵 절차를 많이 자주 남용한다 그런 걸 드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이게 비상계엄 상황이 되는가……

○서영교 위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소위원장 김승원 안 되지요. 법조인이라면 이게 전시 그다음에 사변에 준하는 그런 혼란 상태인가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법무부장관이라든가 또 경찰청장도 그 법률 비서들이 다 있을 텐데, 참모들이 있을 텐데 국방부장관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서 걸러 내서 이것 갖고는 비상계엄 발령을 못 합니다라고 막아 줬어야 되는데 그냥 발령이 되고 군대들이 동원됐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기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체제가 튼튼한 줄 알았더니 대통령의 그런 근거 없는 저 한마디에 군대가 동원되고 경찰 병력이 동원되고 이게 너무 무너지더라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토대가 부실하구나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격이 추락하고.

그래서 요즘 헌법 공부를 해야 된다, 공무원들도 헌법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뒤늦은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확실하게 우리나라 체제를, 아무리 대통령이 명령했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장관이라든가 또 군사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꼭 다음부터라도 확실하게 토대를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윤 위원 잠깐만 저도 하나만.

○소위원장 김승원 그래서 아마 서영교 위원님도 그런 질문을 하신 거고 대통령이 그랬다 하더라도 장관이라든가 또 장관이 못 하면 그 밑에 차관도 계시고 법률적인 조언을 할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안 됩니다라고 자기 목숨을 걸고 직을 걸고 옳은 소리를 할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보면 중간에 소령, 중령, 대령들이 오히려 그걸 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이거 아니니까 국민들 상대로 총기 사용하지 마라, 절대로 물리적 폭력 행사하지 마라, 오히려 그분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비상계엄 해제가 된 거고요. 물론 국민들께서 먼저 뛰어 나오신 것도, 막아 주신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윗분일수록 더 그런 철저한 헌법관이라든가 준법의식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성윤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시지요.

○**이성윤 위원** 차관님, 아까 서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전부 다 모두 구두로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는데……

○**소위원장 김승원** 브리핑도 해야 되는데 짧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성윤 위원** 예.

장관님이 국무회의에 가려면 문서를 작성해 주잖아요, 보통 법무실에서 검토해 주시고.

○**법무부차관 김석우** 일반적으로 국무회의에 안건을 보고하지요.

○**이성윤 위원** 그다음에 그 문서가 있었는지 여부하고, 류혁 감찰관이 참석했다는 회의가 바로 이 회의인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 회의가 회의록이 있는지 하고, 그다음 날 12월 4일 날 6시 반, 7시경에 장관이 또 가요. 그렇잖아요. 그때 문서를 작성해 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문서에 대해서 있는지 여부, 있다면 오늘 중으로 좀 제출을 해 줄 수 있나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첫 번째, 두 번째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성윤 위원** 장관이 12월 4일 날 저녁에 법제처장, 행정안전부장관, 셋이 만나러 가잖아요. 만나러 갈 때 그때도 무슨 보고서가 있을 것 같은데?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부분은 저희도 구체적인 그 경위는 알지는 못한 부분이라 아마 그건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된 문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건 없는 건 확실하고요 세 번째 것은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석우 차관님, 배형원 차장님과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승원 박균택 서영교 유상범 이성윤 전현희

○**첨가 위원(1인)**

주진우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김석우

기획조정실장 변필건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